

## KIND-BID-2019-1~5호 입찰 관련 질의응답

### <공통사항>

□ 관련조항 : 첨부7. 제안서 작성양식<서식4>의 양식3 및 양식4의 주) 4호

Q1 : 실적증명서는 12부 모두 원본 제출해야 하는지?

A1 : 실적증명서는 원본 제출. 단, 제안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원본은 최소 1부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사본(‘원본대조필’ 또는 ‘사실과 상위 없음’ 날인) 제출하여도 인정함.

□ 관련조항 : 첨부1. 제안요청서 중 IV. 제안서 작성 요령

Q2 : 제안서 내용은 A4용지 20페이지 이내(표지 및 양식 7, 첨부자료 제외)인데, 공동수급사가 많을 경우 양식2~5번의 내용이 많아짐. 이 때 전체적으로 20페이지를 넘어도 되는지?

A2 : 제안서 내용은 A4용지 20페이지 이내(표지 및 양식 7, 첨부자료 제외)로 작성하고, 작성순서는 ‘첨부 7. 제안서 작성 양식<서식 4>’의 ‘제안서 작성순서’에 따름. 이 때 ‘제안서 작성순서’의 2. 회사소개서, 3. 용역수행 실적(기관), 4. 용역수행실적(참여인력)은 중요사항만 요약 기재하고 첨부자료는 6.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

□ 관련조항 : 첨부7. 제안서 작성양식<서식4>의 양식6

Q3 : 제안서 평가 기준상 재무, 기술, 법률 분야 중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분야별 책임연구원을 평가하는 경우, 양식6의 ‘과업수행조직도’ 변경 가능한지?

A3 : 변경 가능. 단, 평가대상인 분야별 책임연구원은 조직도의 분야별 책임 연구원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 중 1인을 전체 PM으로 지정

□ 관련조항 : 입찰공고문 중 4. 입찰제출서류

Q4 : 입찰참가자격 등록서류 중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양식은?

A4 : KIND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양식은 없음.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공용계약운용요령 별첨1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기 바람.

□ 관련조항 : 입찰공고문 5. 제안서 평가

Q5 : 제안서 발표 시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, 자유 PPT 양식인지?

A5 :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음

□ 관련조항 : 첨부1. 제안요청서 중 붙임. 입찰참가자 제안서 평가 기준

Q6 : 주1) 계량평가(정량평가) 세부 평가기준 중 ‘인력보유 현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증빙자료 제출(4대보험 가입자증명서 등)’의 대상은?

A6 : 해당 증빙자료 제출대상은 정량평가 대상이 되는 분야별 책임연구원임.

□ 관련조항 : 첨부7. 제안서 작성양식<서식4>의 양식3 및 양식4의 주) 1호

Q7 : 기본설계, 실시설계, 기본계획 수립 등도 실적으로 인정하는지? 최근 3년 이내 실적만 가능한지?

A7 : 평가대상사업 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료한 국내·외 사회기반시설관련 사업타당성조사(재무, 법률, 기술 등) 사업임.

□ 관련조항 : 첨부1. 제안요청서 중 붙임. 입찰참가자 제안서 평가 기준

Q8 : 책임연구원의 자격증빙은 어떻게 하며 어떻게 평가하는지?

A8 : 분야별 책임연구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 제안서 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자격기준 및 실적조건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함 (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16페이지 참조).

□ 관련조항 : 첨부7. 제안서 작성양식<서식4>의 양식3 및 양식4의 주) 1호

Q9 : 모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적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해당 입찰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시설분야의 실적만 인정되는지?

A9 : 평가대상사업 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료한 국내·외 사회기반시설관련 사업타당성조사(재무, 법률, 기술 등) 사업임.

<KIND-BID-2019-5호 관련>

□ 관련조항 : 첨부1. 제안요청서 중 붙임. 입찰참가자 제안서 평가 기준

Q10 : 평가를 받지 않는 법률, 재무분야에 대해 외부업무위탁을 주고 해당 분야 책임연구원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서도 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?

A10 : 해당 입찰은 기술분야 책임연구원만 정량평가함.